

#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재 결

사 건                    행심 2019-101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 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학교장  
심판청구일            2019. 7. 5.

##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5. 28. 청구인에게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정지 20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이수를 명한다.

## 이 유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같은 학교 1학년 후배인 피해학생이 핸드폰으로 청구인에 관하여 뒷담화를 하는 내용의 글을 써 친구들에게 보낸 사실을 알고서, 2019. 4. 24. A를 포함한 15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 급식실 앞에서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2019. 4. 25. 13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 급식실 앞에서 다시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8명의 학생과 함께 학교 홈페이지실로 피해학생

을 포함한 1학년 후배 3명을 불러 바른대로 말하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날 종례 후 5명의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약 30분 동안 피해학생의 핸드폰을 검사하였고, A는 선생님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피해학생을 개인 용변칸으로 데리고가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5.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하고, 2019. 5.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를 개최하여, 2019. 5. 28.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보호자 동반교육』 조치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전학』 조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7. 2. ‘기각’ 결정을 받았다.

##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나오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청구인에 관하여 뒷담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행동에 대하여 충고함으로써 피해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방법이 잘 못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조치 이후 청구인의 보호자가 피해학생의 보호자들과 학생들을 만나 사과하고 원만하게 화해하였으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청구인이 전학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에 대한 전학조치는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 3.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 및 보호자는 청구인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학생의 뒷담화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보인다.

학폭위에 참석한 일부 피해학생 학부모는 강제전학을 요구하였고, 학폭위가 끝난 5일 후인 2019. 5. 15.에도 두 명의 학부모가 가해학생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학폭위 결과 전학조치를 받고 나서야 재심청구,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과와 반성의 진성성에 의문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후 학폭위가 개최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가해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의 사과와 화해는 ‘전학’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되며, 피청구인의 조치결과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재차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조치는 합당하다.

####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청구인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경미한 이유로 다수 위력을 보이면서 공포심을 유발하고 위협한 사실은 인정된다.

청구인은 지각을 자주하고 무단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수업태도가 불량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른 학생의 물건을 절취하는 등 학생으로서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의 종류 중 매우 무거운 전학조치를 내려 해당 학교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한 전학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청구인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② 피청구인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청구인과 같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③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조치와 같이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력행위가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한 최대한의 선도와 교육을 한 다음, 그러한 수단으로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더는 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것이 어렵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학 혹은 퇴학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④ 청구인의 폭력은 피해학생의 경미한 잘못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급생이 여러 명 모여 위력을 보이고 위협한 것으로 폭력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학생을 위협한 기간이 이틀 정도이고 직접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청구인의 보호자 역시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합의를 하는 등 청구인의 잘못을 함께 사죄하면서 청구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청구인에 대한 전학조

치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⑥ 청구인은 평소 학습태도가 양호하지 않고 학생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하며, 담임선생님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교사의 지도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등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춘기 학생으로 아직 자신의 행동의 시비를 정확히 판단하기에 이른 때이다. 또한 청구인의 보호자가 향후 청구인에 대한 지도와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⑦ 위와 같은 폭력행위의 동기나 태양,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교정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력성을 보이는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청구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청구인을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⑧ 이 사건 전학조치는 청구인이 그동안 학교 내에서 이루어 놓은 성과나 교우 및 선생님과의 관계를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 퇴학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전학조치가 그대로 실현될 경우 청구인으로서 단기간에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칠 뿐 아니라,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온 학생이라는 인식 때문에 새로운 교우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다시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진학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장래의 선택에도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⑨ 한편 청구인을 징계할 충분한 사유가 있으나, 청구인의 장래를 위해 좀 더 교육적인 징계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극단적인 중징계를 선택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 청구인의 폭력행위가 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학교폭력을 공동으로 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조치 정도, 피해학생 및 보호자와의 화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출석정지 20일을 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조치를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